



규정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8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
- 제3장 전기안전관리
- 제4장 유지 보수
- 제5장 운전 및 조작
- 제6장 사고 및 재해대책
- 제7장 공사계획과 실시
- 제8장 기록
- 제9장 책임의 한계

부칙
별표

작성부서	시설과	제정일자	2011. 12. 09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2/8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1. 12. 09.	- 전기안전관리 운영규정 제정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자격소지자나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2년 이상자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4년 이상자 중에서 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자격 이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보호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전기사용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 또는 계전기의 1차측까지로 하고, 전기사용기기는 제외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대학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 전기설비의 설치자 및 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계

- 제5조(전기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업무조직)** ① 총장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조직의 장이 된다.
- ② 전기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사자 중 전기관계법령에 적합한 인원을 선임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의 운영을 관리·감독 한다.
 - 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지는 구내의 입주업체 및 독립기관들의 안전관리 선임업무는 제외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6조(안전관리업무의 감독)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는 사무처장이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감독에 임하도록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의 설치자 및 이 대학의 교직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③ 전기안전관리원의 직무는 안전관리사를 보조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의무) ① 자가용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자가용전기 설비의 유지·운영과 안전에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제3장 전기안전관리

제9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재해 기타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지시의 준수) 교직원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4장 유지 보수

제11조(순시, 점검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순시, 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시설 점검 일지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기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정밀점검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불합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재발장비) 사고 기타 이상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안전검사)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기 안전 검사를 대행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①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② 검사대상 및 주기
 1. 정기검사 :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기본검사 (3년 1회 ; 전기사업법 제65조)
 2. 사용전검사 : 설치 또는 변경되는 전기설비 (사용 전 1회 이상 ; 전기사업법 제63조)
 3. 정밀검사 : 자가용전기설비 전체 정밀검사 (3년 1회 ;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제14조(순회점검 또는 검사 후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순회점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안전 검사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운전 및 조작

제15조(운전조작 등)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 종합변전실, 각 지역 변전실, 수 배전 전로 등에 대한 감시
2. 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 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요령
3. 자가용전기설비의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관련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변전실, 사무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수전용 차단기(CH)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관련부서와의 연락을 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및 재해대책

제16조(위험표시 및 측정·장비류 정비) ① 수·변전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 및 장비류는 전기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방재체계) ① 전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기실 관련 근무자는 즉시 사고 구간의 확인·점검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통지하여 비상조치를 받는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항의 비상재해발생시 사태를 장악하여 자가용전기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즉시 개시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복구에 필요한 관련 근무자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 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발생 보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조치내용 등을 소속기관의 상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 사태를 분석하여 사고의 과급이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한국전력공사의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20조(공사계획) ①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의 중요한 수선 및 개선평사 계획을 입안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 공사가 완성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

제22조(기록) ① 전기설비의 운전상황,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요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은 5년간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이나 전기사업자 등에게 제출한 서류나 도면 기타 주요문서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25조(책임의 한계) 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의 안전관리상의 책임한계점은 설비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②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범위는 분전반에서 전선로를 거쳐 전기사용기에 공급하는 전원차단기 1차측까지로 한다.

제26조(안전관리 책임) ① 이 규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 책임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속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원은 전기안전관리사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A163	
			제정일자		2011. 12. 09.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8/8

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전기안전 책임은 그 교직원에게 속한다.

제27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사업법
- ② 학교시설물 사용 및 관리 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시설 점검 일지		결 재	계장	과장	차장	처장
20 년 월 일 () 요일 회차						
내용	건물명					비고
	변압기용량(kW)					
	전력감시시스템					
수 변 전 반	큐비클상태					
	개폐기 및 차단기					
	조작, 램프, 스위치등					
	선로상태					
	단자상태					
	보호계전기					
	변압기온도					
	소음, 진동, 냄새등					
정 류 기 반	큐비클상태					
	개폐기 및 차단기					
	조작, 램프, 스위치등					
	선로상태					
	단자상태					
	입력전압(V)					
	출력전압(V)					
	충전상태					
	교체시기					
	출고일자					
	제품					
배 전 반	큐비클상태					
	개폐기 및 차단기					
	조작, 램프, 스위치등					
	선로상태					
	단자상태					
	보호계전기					
	전기실 환경상태					
	전기실 통제상태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발전기 점검 일지		결재	계장	과장	차장	처장	
20 년 월 일 () 요일 회차							
내용		건물명					
설치년도							
용량(kw)							
운전	운전방식	자동/수동	자동/수동	자동/수동	자동/수동	자동/수동	
	운전시간	분	분	분	분	분	
	전압(V)	R					
		S					
		T					
	주파수(Hz)						
운전상태							
연료	종류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탱크용량	200 ℓ	200 ℓ	200 ℓ	200 ℓ	200 ℓ	
	잔류량	%	%	%	%	%	
외관	누수/누유 상태						
	단자 체결상태						
	배관 연결상태						
배터리	전압(V)						
	충전상태						
	교체시기						
	출고일자						
	제품						
운전반	각종 계기						
	각종 램프						
	각종 스위치						
소모자재	냉각수 및 부동액						
	오일필터						
	엔진오일						
	공기필터						
	연료필터						
난방용 히터							
기타							